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8일, 남인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
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부족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권 보장의 실효성

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정보는 개인의 재산상황과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특히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간의 균형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직권신청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와 요건뿐만 아니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 이용 목적 등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1조의2 인사상 우대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상황이나,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급여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양 제도가 병행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성년 후견제도와 의 적용관계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이나 운영지침 등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급여관리자는 수급자의 급여를 대신 관리하거나 그 사용에 관여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개인의 재산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관리자의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적정한 관리와 함께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